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7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10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0. 7. 2.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취득세 63,676,870원, 농어촌특별세 5,425,6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취득세 1,399,0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1. 24. 전기컨트럴 박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 50,000주의 50%인 25,000주를 소유하고 있던 중 2017. 12. 1. C로부터 그가 소유하던 나머지 50%의 주식 25,000주 중에서 이 사건 회사 총 발행주식의 2%에 해당하는 50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C로부터 쟁점 주식을 양수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주식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1%에 해당하는 25,500주로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6. 4.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2017. 12. 1.를 기준시점으로 이 사건 회사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 소유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부동산 4,666,666,559원, 차량 102,530,390원)에 원고 소유 주식비율인 51%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63,676,870원, 농어촌특별세 5,425,670원, 취득세 1,399,010원 합계 70,501,55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7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지방세기본법 제17조의 실질과세의 원칙 및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1) 원고는 C로부터 쟁점 주식 500주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받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C이며,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C는 2019. 4. 18.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쟁점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으므로, 2019. 6. 4.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형식적으로도 쟁점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었다.

2) 원고는 오로지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종 지원 및 혜택을 받게 할 목적으로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일 뿐, 쟁점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과점주주'였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원고가 형식적으로나마 과점주주였던 2017. 12. 1.~2019. 4. 18.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쟁점 주식에 관하여 실질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기회 자체도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과점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규정 등

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7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본문은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본문에 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7

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역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등 참조). 과점주주의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에서 말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주식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2750 판결,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900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 8, 9, 10,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7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쟁점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쟁점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람이 C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2017. 12. 1. 쟁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쟁점 주식 500주를 1,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고, 쟁점 주식에 관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C는 2018. 3. 31. 양도소득금액 1,000만 원[= 1,500만 원 - (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 5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150만 원을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C는 2019. 5. 1. 쟁점 주식의 매매대금 1,500만 원의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다는 내용의 주식 매매계약 해제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쟁점 주식에 관하여 C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7. 12. 1.경 쟁점 주식의 취득으로 과점주주가 된 시점에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소정의 간주취득세가 성립하는 이상 위와 같은 합의해제에 의하여 주식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다) 원고가 제출한 2017. 12. 1. 주식명의신탁약정서(갑 제7호증)는 '원고가 C의 주식 500주를 무상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약정서는 그 작성일자가 확정일자 있는 공정증서로 작성되지 않았고, 2019. 12. 6. 이 법원에 제출되기 전까지 세무조사 과정 등 이전 절차에서는 제출된바 없는 점, 쟁점 주식에 관하여 상법상 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7

결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볼만한 정관 규정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식명의신탁약정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회사를 여성기업법상 여성기업으로 확인받아 여러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여성기업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다음 항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는 오히려 쟁점 주식의 취득이 의결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주주권의 양도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

라) 여성기업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표권이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자기의 명의로 소유하는 출자지분이 최대인자)인 상법상의 회사를 말하고, 이때의 '출자지분'에 대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주식회사인 경우 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기업법상 '여성기업'이라 함은 결국 여성 대표가 최다 지분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주주로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함으로써 소유 및 경영할 것을 전제하고 있다.

마)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행한 '여성기업확인서'는 '원고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가 여성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원고는 위 확인서를 2020. 5. 13. 재발급 받아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유효기간인 2017. 12. 27.부터 2020. 12. 26.까지의 3년이 아직 도과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7

경영을 해왔다는 것으로서 2013. 2. 22.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반면, C는 2015. 6. 30.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에서 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을 뿐 그동안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쟁점 주식을 취득한 이후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아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제약 없이 쟁점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이상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7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07

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2017. 12. 26.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끝.